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5048

제출연월일 : 2024. 10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공무상 재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적과의 교전 등으로 사 망한 공무원의 유족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그 지급대상 의 범위를 확대하고,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지정하도록 하며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뿐만 아니라 인사 혁신처장이 재해예방 및 공무원 재활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각종 지 워 사업에 드는 비용까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. 경찰공무원이나 소 방공무원이 아닌 공무원도 군인 · 경찰 · 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.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호 각 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가. 분쟁지역 등에서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수집

나. 방첩 활동

다.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응조치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직무

제16조제2항 중 "「국세징수법」"을 "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강제징수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 중 "체납처분"을 각각 "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"으로 한다.

제18조제1항 단서 중 "「국세징수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"을 "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강제징수나 「지방세징수법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"으로 한다.

제39조제3항 중 "제5조제1호나목에 따라 대간첩 작전 수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하여"를 "대간첩 작전 수행, 적과의 교전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폭동,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"로 한다.

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이하 이 조에서"를 "이하"로, "수립·추진할 수 있다"를 "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각 호 외의 부분 중 "실시할 수 있다"를 "실시하여야 한다"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책의 수립·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.
-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46조의2(공무원의 책무) 공무원은 재해예방을 위하여 제46조의3제5 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 법에 따른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.
- 제46조의3(건강안전관리체제 등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여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를 담당하는 건강안전담당관을 소속 공 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.
 -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(이하 "건강관리의 등"이라 한다)을 각각 배치할 수 있다.
 - 1. 건강관리의: 공무원의 건강관리 업무와 건강지도관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
- 2. 건강지도관: 건강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 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 람
- 3. 안전지도관: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전책임 관을 보좌하고 건강안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 람
- 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건강관리의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·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있다.
-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.
- 1.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에 관한 조직과 그 직무 및 예산 확보 에 관한 사항
- 2.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, 재발방지 대책 등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 방법
- 3.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속 공무원 의견 청취 절차
- 4. 재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
- 5.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⑥ 제1항·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책임관·

건강안전담당관의 업무·자격·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- 제46조의4(건강안전협의회) ① 인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, 정보 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안전책임관으로 한다.
 - ③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.
 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6조의5(기본계획의 수립 등) ①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- 2. 공무원 재해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
 - 3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 - 4. 공무상 재해예방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
 - 5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관련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
 - 6. 그 밖에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 - ②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연도별 계획(이하 "연도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,

- 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・시행하여야 한다.
- 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 매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 및 시행계획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 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- 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·연도별계획·시행계획의 수립·시행, 추진실적·시행계획의 평가·공표, 개선 권고 조치 및 실태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6조의6(공무상 재해 통계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·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종합적으로 작성·관리하고 이를 공표할 수

있다.

- 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·관리를 위하여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-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6조의7(건강검진 등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수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에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이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 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재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 -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,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 -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공무원의 건강안전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 - ⑤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

있다.

제4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·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.
-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및 제47 조제1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9조의 제목 "(재해보상부담금)"을 "(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)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제48조제1항"을 "제48조제1항 및 제2항"으로, "재해보상부담금"을 "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전단 ·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"재해보상부담금"을 각각 "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"으로 한다.

제50조 전단 중 "재해보상부담금"을 "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"으로 한다.

제5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 아 닌 공무원이 군인·경찰·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위 험직무순직공무원이 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5에 따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· 의결을 거쳐 제2항제1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.

제61조제1항제4호 중 "결손처분·체납처분"을 "결손처분·강제징수·체납처분"으로 하고, 같은 항 제9호 중 "재해보상부담금"을 "재해예방 및보상부담금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체납처분"을 "강제 징수·체납처분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"인사혁신처장은"을 "인 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"로 한다.

부 칙

- 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.
 - 1. 제5조제4호의 개정규정: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
 - 2. 제16조제2항 · 제3항, 제18조제1항, 제39조제3항, 제59조제2항, 제61조제1항제4호 및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: 공포한 날
- 제2조(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에 관한 적용례 등)
 - ① 제5조제4호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부칙 제1조 제1호에 따른 시행일 전까지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 - ② 2024년 1월 1일 전에 종전의 제5조제4호 각 목에 따른 직무를

수행한 국가정보원 직원의 위험직무순직공무원 요건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제5조제4호 각 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 에 따른다.

- 제3조(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에 관한 적용례) 제39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망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하다.
- 제4조(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) ① 인사혁신처장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제46조의5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지체 없이 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.
 -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까지 제46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제5조(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에 관한 적용례)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 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분의 예 산을 편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- 제6조(보훈 등의 예우에 관한 적용례) 제5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사망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.
- 제7조(보훈 등의 예우에 관한 경과조치)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에 사망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에 관하

여는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	제5조(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
건에 해당하는 재해) 위험직무	건에 해당하는 재해)
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	
재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	
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.	
1. ~ 3. (생 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국가정보원 직원이 다음 각	4
목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입은	
재 해	
가. 「국가정보원법」 제3조	가. 분쟁지역 등에서 「국가
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	정보원법」 제4조제1항제1
<u> 직무</u>	호에 따른 정보 수집
나. 간첩 체포 및 방첩 활동	<u>나. 방첩 활동</u>
다. 분쟁지역 등에서 대테러	다. 「국가정보원법」 제4조
및 국제범죄조직 등 보안	제1항제3호에 따른 대응조
정보 수집	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
	<u>는 직무</u>
5. ~ 11. (생 략)	5. ~ 11. (현행과 같음)
제16조(급여의 환수 등) ① (생	제16조(급여의 환수 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	2
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	
를 환수할 때에 환수금을 내야	
할 사람이 기한까지 내지 아니	

하면 「국세징수법」 또는 「지 방세징수법」에 따른 체납처분 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③ 인사혁신처장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급여 를 환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결손처분할 수 있다. 다 만, 제1호와 제3호의 경우에 결 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<u>체납</u>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.

- 1. <u>체납처분</u>이 종결되고 체납액 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체납액 보다 적은 경우
- 2. · 3. (생략)
- 제18조(권리의 보호) ① 급여를 지받을 권리는 양도,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 다만,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담보로 제공할 수 있고, 「국세진수법」, 「지방세징수법」,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체납처분

「국세징수법」에 따른 강
<u> 제징수</u>
③
<u>강제</u>
징수 또는 체납처분
1. <u>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</u>
2. • 3. (현행과 같음)
제18조(권리의 보호) ①
「국세
징수법」에 따른 강제징수나
「지방세징수법」 및 그 밖의

- 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.
- ② (생략)
- 제39조(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)
 - ① · ② (생략)
 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<u>제5조제</u> 1호나목에 따라 대간첩 작전 수 <u>행 중 입은 재해로 인하여</u> 사망 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 에게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 족보상금은 공무원 전체의 기준 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로 한 다.
- 제46조(재해예방) ①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이 안 심하고 직무에 전념함으로써 국 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상 재해의 예방(이하 이 조에서 "재해예 방"이라 한다)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・추진할 수 있다.
 - 1. ~ 4. (생 략)
 - ②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예방 관 런 시책을 종합적·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

법률에 따른 체납처분
② (현행과 같음)
제39조(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)
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대간첩
작전 수행, 적과의 교전 또는 적
의 행위로 인한 사망이나 무장
폭동,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
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직
접적인 원인이 되어
제46조(재해예방) ①
이하

수립·추진하여야
<u>수립·추진하여야</u> 하다.
<u></u> 한다.

사업을 <u>실시할 수 있다</u>. 1. ~ 6. (생 략) <<u>신 설></u>

<신 설>

<신 설>

- ---- 실시하여야 한다.
- 1. ~ 6. (현행과 같음)
- ③ 인사혁신처장은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의 제1항 각 호에 따 른 시책의 수립·추진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할 수 있 다.
- 제46조의2(공무원의 책무) 공무원은 자해예방을 위하여 제46조의 3제5항에 따른 건강안전관리규 정을 준수하여야 하며,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.
- 제46조의3(건강안전관리체제 등)
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
 장은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
 무를 총괄하는 건강안전책임관
 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
 여야 한다.
 - 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안전책임관을 보좌하 여 해당 기관의 재해예방 업무 를 담당하는 건강안전담당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.
 -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

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(이하 "건강관리의등"이라 한다)을 각각 배치할 수 있다.

- 1. 건강관리의: 공무원의 건강관 리 업무와 건강지도관을 지도 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
- 2. 건강지도관: 건강에 관한 기 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 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 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 를 수행하는 사람
- 3. 안전지도관: 안전에 관한 기 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건강안 전책임관을 보좌하고 건강안 전담당관에게 조언하는 업무 를 수행하는 사람
- 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각 호에 따른 건강 관리의등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・법인 또는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

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

 된 건강안전관리규정을 작성하

 여야 한다.

- 1. 기관 내 건강 및 안전 관리에

 관한 조직과 그 직무 및 예산

 확보에 관한 사항
- 2. 위험요인 진단 및 조치, 재발

 방지 대책 등 기관 내 건강 및

 안전 관리 방법
- 3.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

 대한 소속 공무원 의견 청취

 절차
- 4. 재해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

 5. 그 밖에 재해예방에 필요한
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⑥ 제1항・제2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책임 관・건강안전담당관의 업무・ 자격・지정 및 건강안전관리규정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6조의4(건강안전협의회) ① 인

 사혁신처장은 건강 및 안전 관

 련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, 정보

 교류 및 관련 기관 간 협의 등

<신 설>

<신 설>

-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강안전협의회를 구성・운영할 수 있다.
- ②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건강 안전책임관으로 한다.
- ③ 건강안전협의회의 위원장은 인사혁신처차장으로 한다.
-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강안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6조의5(기본계획의 수립 등)
 ① 인사혁신처장은 5년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기본계획(이하 "기본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야 한다.
 - 1.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
 - 2. 공무원 재해예방 교육 프로

 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

 사항
 - 3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관련 연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. 공무상 재해예방 관련 홍보

에 관한 사항

- 5. 공무원 건강 및 안전 관련 시 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
- 6. 그 밖에 공무원의 건강 및 안 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 항
- ②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 건강 및 안전에 관한 연도별 계획(이하 "연도별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고, 이를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매년 공무원 건강 및 안전 에 관한 시행계획(이하 "시행계 획"이라 한다)을 수립·시행하 여야 한다.
- ④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난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다음 해의 시행계 획을 매년 인사혁신처장에게 제 출하여야 한다.
- ⑤ 인사혁신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 및 시행

<신 설>

계획을 평가하여 공표할 수 있으며, 소속 공무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보호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기관에는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

- ⑥ 인사혁신처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 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해예방 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
- ①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·연도 별계획·시행계획의 수립·시 행, 추진실적·시행계획의 평가 ·공표, 개선 권고 조치 및 실태 조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.
- 제46조의6(공무상 재해 통계)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재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작성・관리하여야 한다.
 - ②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의 재 해예방 및 재활을 위하여 공무 상 재해 현황에 관한 통계를 종

<신 설>

합적으로 작성·관리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.

③ 인사혁신처장은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·관리를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요청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의 작성·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제46조의7(건강검진 등) ① 국가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「국민건강보험 법」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, 수검 여부를 관리하여야 한다.

②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강에 장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소속 공무원이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, 검진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업무재배치 등 필요한 조

제48조(비용부담의 원칙) ① (생략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재활·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<신 설>

치를 하여야 한다.

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심리검사 를 실시할 수 있고,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상담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 항 및 제3항에 따른 결과를 공 무원의 건강안전 보호 및 유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.

⑤ 인사혁신처장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부 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 치를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48조(비용부담의 원칙) ① (현 행과 같음)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 조제2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 및 제47조제2항에 따른 재활· 직무복귀 지원 사업에 드는 비 용을 부담할 수 있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6 조제1항에 따른 재해예방 및 제

제49조(재해보상부담금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<u>제48조제1</u> 항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(지방 자치단체 공무원의 재난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의 지급에 드는 비용은 제외한다. 이하 "<u>재해보 상부담금</u>"이라 한다)은 재해발 생률, 부담하는 비용의 범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 담하는 <u>재해보상부담금</u>은 공단 에 내야 한다. 이 경우 <u>재해보상</u> <u>부담금</u>의 납입절차, 정산 및 징 수 등에 관하여는 「공무원연금 법」 제71조제2항부터 제7항까 지를 준용하되, "연금부담금등" 은 "<u>재해보상부담금</u>"으로 본다.

③ <u>재해보상부담금</u>으로 이 법에 따른 급여(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에게 지급되는 재난부조금과 사

47조제1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
복귀 지원 등을 위하여 이에 수
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
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.
제49조(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) ①
<u>제48조제1</u>
항 및 제2항
<u>재해예</u>
<u> 방및보상부담금</u>
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
<u> </u>
. <u>기에 비 이</u> 및보상부담금
<u></u>
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
③ <u>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</u>

망조위금은 제외한다)에 드는 비용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「공무원연금법」에 따 른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일시 차 입할 수 있다. 이 경우 일시 차 입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이자를 가산하여 다음 다음 회계연도 말까지 상환하여 야 한다.

제50조(공무원연금액의 이체) 인 사혁신처장은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 직유족연금을 선택하여 퇴직유 족연금,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 는 퇴직유족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지급하지 아니 한 금액은 다음다음 회계연도의 재해보상부담금 재원으로 이체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순직공무 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유족이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 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는 경우 로서 퇴직유족연금을 받을 권리 가 있을 때에는 퇴직유족연금은

<u>.</u>
제50조(공무원연금액의 이체)
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

그에 상응하는 퇴직유족연금일 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체 할 금액을 산정한다.

제59조(보훈 등 예우) ① (생 략) 저

- ②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 족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 른 예우를 할 수 있다.
- 1. 2. (생략)
- 3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해사망군경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
- 4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해사망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한 예우
- ③・④ (생 략)

<신 설>

제59조(보훈 등 예우) ① (현행과
같음)
②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<u><</u> 삭 제>

<삭 제>

- ③ ④ (현행과 같음)
- ⑤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이나 공무원이 군인·경찰·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직무 수행으로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이된 것으로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위험직무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보아

⑤ (생략)

제61조(업무의 위탁) ① 인사혁신 저 처장은 이 법에 따른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공단에 위 탁한다.

- 1. ~ 3. (생략)
- 4. 제16조에 따른 급여의 환수 및 결손처분·체납처분
- 5. ~ 8. (생략)
- 9. 제49조에 따른 <u>재해보상부담</u> 급의 산정·정산 및 징수관리 등에 관한 사항
- 10. (생략)
- ② 제1항제4호에 따라 공단이 <u>체납처분</u>을 하는 경우에는 인사 혁신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 다. 이 경우 공단의 임직원은 공 무원으로 본다.
- ③ <u>인사혁신처장은</u> 제46조제2 ③ <u>인사혁신처장은 대통</u> 항에 따른 재해예방사업과 제47 로 정하는 바에 따라 --

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
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의5에 따
른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
결을 거쳐 제2항제1호에 따른
예우를 할 수 있다.
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∥61조(업무의 위탁) ①
1. ~ 3. (현행과 같음)
4
<u>결손처분·강제징수·체</u>
<u>납처분</u>
5. ~ 8. (현행과 같음)
9 <u>재해예방및보</u>
<u> 상부담금</u>
10. (현행과 같음)
<u>강제징수·체납처분</u>
3 인사혁신처장은 대통령령으
· 의 전투역인적경단 대중영영으

조제2항에 따른 재활 및 직무복	
귀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	
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.	
④ ~ ⑥ (생 략)	④ ~ ⑥ (현행과 같음)

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
1	- 제39조제3항 (위험직무순직유족	○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위험직 무순직유족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(기존: 경찰공무원의 대간첩작전 수행으로 순직시 → 개정: 공무
	보상금)	원이 군인 전사에 해당하는 직무로 순직시)
2	- 제46조의7 (건강검진 등)	 ○ 국가기관 및 지자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일반 건강검진, 심리검 사 및 업무적 특성을 고려한 건강검진을 지원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 ○ 인사처는 국가 및 지자체의 건강검진 등을 지원하거나 기타예방조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
3	-제48조 (비용부담의 원칙) -제49조제1항 (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)	○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에 재해예방 사업 및 재활·직무복귀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확대 개편
4	-제59조제5항 (보훈 등 예우)	○ 경찰·소방 외 위험직무순직공무원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수 행이 군인·경찰·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경우 「국가유공자법」에 따 른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

Ⅱ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	- 제39조제3항	
1	(위험직무순직유족	
	보상금)	
2	- 제46조의7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
2	(건강검진 등)	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- 제48조 (비용부담의 원칙)	

	-제49조제1항
	(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)
	- 제59조제5항
$\begin{vmatrix} 4 \end{vmatrix}$	(보훈 등 예우)

2. 상세 사유

- (안 제39조)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를 지급하는 위험직무순직유족보 상금의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, 추계를 위해서는 청구 건수 등이 예측되어야 하나, 현재까지 해당 규정으로 심사청구 및 지급된 사례가 없어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- (안 제46조의7)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공무원의 일반 건강검진, 업무상 심흥건간검진, 심리검사 등을 지원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, 지원 및 조치 사항은 각 기관의 상황과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기관 운영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추계가 곤란
- (안 제48조, 제49조) 재해보상부담금의 용도에 공무원 재해예방사업 및 재활·직무복 귀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재해예방및보상부담금으로 확대 개편하는 것으로, 부담금 규모는 매년 예산 편성 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 시점에서 추계가 곤란
- (안 제59조) 경찰·소방 외 위험직무순직공무원도 순직의 계기가 된 직무수행이 군안·경찰·소방의 직무에 준하는 경우 「국가유공자법」에 따른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, 추계를 위해서는 청구 건수 등이 예측되어야 하나, 현재까지 심사청구 사례 및 구체적인 정보를 확보하기 곤란하여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

Ⅲ. 부대의견 : 해당 없음

Ⅳ. 작성자

O 성명

주무관	사무관(서기관)	과장	실장・국장
권창욱	이재원	구혜리	김정연

O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이재원	044-201-8134	jw1123@korea.kr